

부산직할시사하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제정이유서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2. 8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정의 이유

이 조례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구세인 종합토지세, 재산세,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 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음.

2. 주 요 골 자

-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, 사업소세를 면제
-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면제에서 제외

3. 관계법령 :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내무부 준칙

4. 주요사업계획 : 없 습

5. 예산조치사항 : 없 습